

#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818
-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 외 10명
- 발 의 일 : 2020년 8월 12일
- 회 부 일 : 2020년 8월 21일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서울특별시청장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서울특별시청장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전직·현직 시장의 경우 시에 대한 공헌도, 유가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장례를 시청장으로 할 수 있게 함(안 제3조).
- 다. 장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라. 장례위원회 관장 사항(안 제5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장법」, 「국가장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입법예고 (2020. 8. 26. ~ 9. 2.)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서울특별시청장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 동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행정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과 현장 행정의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서울시에 현저히 공헌한 전·현직 시장 및 공무원 등이 사망한 경우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2020년 9월 현재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28개 기초 단체도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 [기관장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현황]

연번	구분	법령명	지자체	제정일
1	광역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경기도	'16.02.24.
2	광역	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	강원도	'16.07.08.
3	광역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16.12.29.
4	광역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19.01.02.
5	광역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	제주특별 자치도	'18.07.13.
6	기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장(葬)·구청장(葬)에 관한 조례	부산진구	'12.10.01.
7	기초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葬)에관한조례	도봉구	'11.04.01.
8	기초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葬)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산구	'18.11.14.

연번	구분	법령명	지자체	제정일
9	기초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	'18.12.07.
10	기초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주시	'11.01.06.
11	기초	수원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19.12.31.
12	기초	안산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산시	'20.07.15.
13	기초	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양시	'18.05.03.
14	기초	영주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주시	'18.12.24.
15	기초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18.05.01.
16	기초	제천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천시	'18.11.23.
17	기초	가평군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평군	'18.11.05.
18	기초	강화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화군	'20.01.01.
19	기초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장군	'15.07.29.
20	기초	영동군 군민장 및 군청장에 관한 조례	영동군	'18.04.30.
21	기초	용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진군	'20.07.10.
22	기초	용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용진군	'13.08.09.
23	기초	음성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15.06.25.
24	기초	증평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증평군	'18.12.28.
25	기초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천군	'19.06.26.
26	기초	청양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양군	'19.12.19.
27	기초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하동군	'19.07.01.
28	기초	해남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해남군	'16.10.13.

연번	구분	법령명	지자체	제정일
29	기초	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	광양시	'20.06.10.
30	기초	김천시민장·시장에관한조례	김천시	'18.12.27.
31	기초	목포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	목포시	'15.08.03.
32	기초	춘천시민장·시장에 관한 조례	춘천시	'18.10.22.
33	기초	남해군 군장·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	남해군	'18.09.20.

- 동 제정안과 같은 장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되어 본 조례제정의 법적 요건은 충족했다고 보여짐.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다만, 조례 제정의 목적, 적용대상, 시청장의 대상 중 전직 시장의 포함에 대한 적정성과 대상의 확장 여부, 지원액의 상한 여부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정목적	적용대상	대상요건	지원액
市 공헌한 사람 사망시 장례 지원	공무원, 공무직 및 청원경찰	市 공헌도·유가족 의견 고려 1. 전직·현직 시장 2. 재직 중 공무로 사망 및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 3.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퇴직 후 사망	상한액 없음

[기관장 관련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자체	제정목적	적용대상	대상요건
1	경기도청장(葬)	공무 수행 중 사망한 소속 직원 장례 지원	공무원, 공무원직,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재직 중 공무상 사망시 자치행정국장 제청, 도지사 결정
2	강원도청장(葬)		공무원 및 공무원직, 기간제 근로자	재직 중 공무상 사망시 장제위원회 심의 결정
3	경상북도청장(葬)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 근로자	재직 중 공무상 사망시 자치행정국장 제청, 도지사 결정
4	경상남도청장(葬)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재직 중 공무상 사망시 자치행정국장 제청, 도지사 결정
5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葬)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원직, 기간제 근로자	재직 중 공무상 사망시 담당부서의 장 또는 행정국장 제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위원회 심의 ※ 도지사와 행정사장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장으로 할수 있다.

- 또한, 당초 제정 취지와 달리 명백한 요건 부재로 새로운 사회갈등을 유발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나. 세부 내용 검토

#####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서울특별시청장으로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서울특별시청장(葬)으로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청장(葬)”(이하 “시청장”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장례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무원등”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 소속 청원경찰(공공안전관)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사망자가 제3조에 따른 시청장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시청장을 원하지 않아 시청장 이외의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제1조 중 ‘시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이라는 용어가 공무원외 시민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현저한 공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현저히 공헌한’ 규정보다 「국가장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회에 공헌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일치 시켜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울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국가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제1조 목적에서 “서울특별시청장(葬)으로” 한문 표기를 병행한 것과 같이 조례 제명에도 한문을 추가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청장의 대상, 장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장례위원회의 관장 사항 등 총 9개 조문을 구성하고 있음.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에 현저한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서울특별시청장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 “서울특별시청장”, “공무원등”, “가족장”을 정의
제3조(시청장의 대상)	- 전직 및 현직시장, 재직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재직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함.

제4조(장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시장은 시청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나 서울특별시청장 장례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5조(장례위원회의 관장 사항)	- 장례식의 일·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장례에 드는 비용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제6조(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제7조(장례의 집행)	- 시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
제8조(장례비용)	- 시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그 외에 비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제9조(그 밖의 사항)	-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부칙	
제1조(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제2조(대상에 관한 적용례)	- 시장은 1995년 7월 1일 이후에 취임 또는 당선된 사람부터 적용하고, 공무원의 경우 조례 시행이전에 재직하던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함.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중 “서울시장”을 “서울특별시청장”으로 개정함.

## 2) 시청장의 대상(안 제3조)

- 안 제3조는 시장은 전·현직 시장, 재직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후 사망한 공무원 등을 서울특별시청장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3조(시청장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에 대한 공헌도, 유가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그 장례를 시청장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현직 시장
2.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등
3.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등

- 동 조문은 서울시에 공헌한 공무원, 공무원직 및 청원경찰을 시청장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적용의 혼란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 다만, 안 제3조에서는 시청장의 대상만을 규정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서울시에 대한 공헌도, 유가족의 의견을 고려하여 시청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재량 과다로 인한 여론 흐름에 따른 시청장 남발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와 제청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안 제3조제1호에서는 전·현직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시장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과(功過)를 떠나 시청장으로 장례를 거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폭 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제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면, 전·현직 시장이 재임중이나 퇴임후 중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시청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의회의 수장인 전직 및 현직의장을 시청장의 대상에 추가할 여지는 없는지 여부 및 별도의 의회장 조례를 통해 운영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경기도 및 강원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도의회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타 지자체 의회장 비교표]

연번	지자체	의회장	제정일	적용대상	대상요건	위원장
1	경기도	경기도의회장(葬)	'08.01.07	현직의원	임기 중 사망시 도의회 사무처장 제청, 의장 결정	도의회 의장
2	강원도	강원도의회장(葬)	'11.12.23	현직의원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 의회사무처장의 제청, 의장 결정	도의회 의장
5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장(葬)	'18.07.13	현직의원 및 의회직원	임기중 사망(의원) 공무중 사망(직원)한자 의회사무처장 제청, 의장 결정	도의회 의장

○ 안 제3조 제3호에서는 “재직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도 시청장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까지 시청장의 범주에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범위 확장으로 시청장의 제한적 허용성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까지 시청장의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은 빈번한 시청장의 발생 소지와 현실적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수정의견을 개진함.

제정(안)	행정국 수정의견
제3조(시청장의 대상) (생략) 1. 전직·현직 시장 2.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등 3. 재직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후 사망한 공무원 등	제3조(시청장의 대상) (생략) 1. <u>현직시장</u> 2.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등 3. <삭제>

지자체	운영현황	대상	장례기간	장례위원회 구성
경기도청장(葬)	'19년 1명	석원호 소방장 (화재)	3일	(장의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위원장) 이화순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회 안행위원장 박근철 도의원 (장의위원)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각 실국장, 도의원 등 40여명
	'18년 2명	오동진 소방장, 심문규 소방교 (보트 전복)	4일	(장의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위원장) 김희겸 행정1부지사, 김진 흥 행정2부지사 이화영 평 화부지사 (장의위원) 실국장 및 김포소방서장
강원도청장(葬)	조례 제정 후 사례없음			
경상북도청장(葬)	조례 제정 후 사례없음			
경상남도청장(葬)	'20년 1명	김익균 서기관 (낙뢰)	3일	(장의위원장)김경수 경남도지사 (부위원장)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葬)	조례 제정 후 사례없음			

### 3) 장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청장의 집행을 위한 장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에 대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4조(장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청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서울특별시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두는 경우 행정1부시장과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부위원장이 된다. 다만, 현직 시장이 사망한 경우에는 행정제1부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두는 경우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부위원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시청장의 집행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 또는 위원을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 가운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국장이 된다.
-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청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장례위원회는 시청장을 집행하기 위한 중추적이고,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위원의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위원의 수 미규정이 시장의 자의적인 위원회 구성의 우려는 없는지, 의견 충돌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장례’의 단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 ‘장의’ 등으로 혼용 사용되고 있고, 상위법령과 상이한 바,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구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제4조(경기도청장 장의 위원회) ① 경기도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경기도청장 장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4) 장례위원회의 관장 사항(안 제5조)

- 안 제5조는 장례식의 일·장소 및 방법,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장례의 실질적인 절차 및 소요 비용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임.

제5조(장례위원회의 관장 사항)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장례식의 일·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드는 비용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 동 조문은 장례위원회의 관장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5)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안 제6조는 장례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청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6조(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청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집행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집행위원은 장례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에 따른 행정지원, 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 집행위원회는 장례위원회의 부속기관으로써 장례위원회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역할 및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집행위원회가 장례위원회의 부속위원회로써 형식적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내실있는 계획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6) 장례의 집행 및 비용(안 제7조)

- 안 제7조는 시청장의 결정에 따른 집행을 위해 빈소 설치 및 운영 등 제반 절차를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장례에 따른 비용 부담을 규정하고 있음.

**제7조(장례의 집행)** ①시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殯所)를 설치·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②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향소(焚香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장례비용)** ① 시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가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2. 노제(路祭) 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가족장의 경우 유가족은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안 제7조는 시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운영하고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하도록 함으로써 장례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안 제7조는 「국가장법」 제4조를 인용하여 규정한 것인 바,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법령의 부합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국가장법」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다만, 분향소 설치의 규모와 장소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여부와 분향소 설치에 따른 질서유지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마련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안 제8조는 시청장으로 치러지는 장례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문객 식사 비용 등을 제외한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안 제5조제2호에서 장례에 드는 비용의 운용에 관한 사항중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바, 장례 비용에 대한 상한선의 규정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와 다른 타·시도의 사례를 감안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관장 장례에 대한 지원액 현황〉

연번	지자체	지원액
1	경기도청장(葬)	7천만원 이하
2	강원도청장(葬)	상한액 없음
3	경상북도청장(葬)	5천만원 이하
4	경상남도청장(葬)	5천만원 이하
5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葬)	상한액 없음

- 또한, 서울시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장례비용을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두 조례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장례비용) 제6조(장례비용) 시장은 장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7) 부칙사항 검토

- 부칙은 본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시행일과 본칙의 시행에 따른 과도적 조치인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적용례 등을 규정한 부분으로써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시청장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동 부칙조문은 동 제정안 제3조와 연계하여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부칙 제2조(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 이후에 취임 또는 당선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2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공무원등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3조제3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공무원등에게도 적용한다.

- 행정국은 부칙 제2조제1항은 적용기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해당 적용대상자(전·현직)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국가장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어 실익이 적고, 제2조제3항의 퇴직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청장의 빈번한 시행으로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바, 적용 대상과 시기를 어디까지로 하는 것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정안	행정국 수정의견
<p>부칙 제2조(대상에 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은 1995년 7월1일 이후에 취임 또는 당선된 사람부터 적용한다.</p> <p>② (생략)</p> <p>③ 제3조제3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공무원등에게도 적용한다.</p>	<p>부칙 제2조(대상에 대한 적용례) ①&lt;삭제&gt;</p> <p>② (생략)</p> <p>③ &lt;삭제&gt;</p>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